#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26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김도읍・신동욱・권영세

인요한 • 조지연 • 김예지

박성훈 • 구자근 • 장동혁

김은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의 경우 입양 전에 양육 능력 및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 예비양부모 교육 및 가정법원의 심 리 참여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를 위한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자녀를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에 대한 유급휴가를 신설하면서 국가의 재정이나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부부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의 지급요건 등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2호, 제77조제1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7에 따른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과 같은 법 제19조의7에 따 른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 기간 중 5일.

제77조제1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 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시 제18조에 따라 피보 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산 ·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제18조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같은 법 제19조의7에 따른 예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 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 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

- 1. (생략)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 ② · ③ (생 략)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출산휴가"로 본다.

②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의 필요) 2. <u>「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u>
<u>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u>
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
가 기간 중 최초 5일과 같은
법 제19조의7에 따른 예비양
부모 양자 입양 휴가 기간 중
<u>5일.</u>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준용) ①
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
우자 출산휴가 또는 예비양부